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0. 12. 10.(목)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2(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반복적 안전에 해당하며, 보고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전에 해당하는 안전임

② 의결사항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0-68(서)-29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세빛넷, 현대유선방송사, 양산유선방송사, 심천유선방송사, (주)미금유선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건 (2020-68(서)-29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10 시행)」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제정안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여 3단계(매우중대-중대-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감경

다.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68(서)-298~306)

- 「방송법」 제73조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제59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조선방송 등 9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조선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	2,000만원
(주)동아티브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500만원
포항문화방송(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750만원
(재)시민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900만원
(주)기독교복음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150만원
(주)CMB대전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주)에스티엔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나목·다목	1,100만원
(주)법률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나목·다목	2,550만원
(주)광주문화방송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750만원

라.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68(서)-307~309)

- 「방송법」 제74조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주)엠비씨플러스 등 3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엠비씨플러스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재)기독교방송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울산문화방송(주)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제2호	350만원

③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재검토 기한 만료('20.12.31)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2.31에서 '23.12.31로 3년 연장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